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4

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정청래·박성준·권인숙

노웅래 · 양기대 · 김경만

김영호・홍성국・김두관

김회재 • 이재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, 현행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에 의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.

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 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임.

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32조제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어린이 보호구역 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	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	
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	
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	
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	
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	
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	
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어린이 보호구역 내